대한민국 국방부
Ministry of National Defense

예비군훈련은 신성한 병역의무 입니다.

예비군훈련 참석으로 불이익이 발생될 경우, 적극적으로 신고 바랍니다!

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예비군에게 결석처리, 시험 0점 처리 등 불리한 처우 시 처벌(1년 이하 징역, 2천만원 이하 벌금,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등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예비군훈련 참석으로 불이익이 발생될 경우
소속 예비군부대 또는 **국방민원콜센터** (1577-9090)로 **신고 바랍니다.**

관련법

- 「예비군법」 제10조의2
  :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보장
- 「병역법」 제74조의3
  : 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

처벌법

- 「예비군법」 제15조
  : 벌칙
- 「병역법」 제74조의3
  : 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

제작지원 국방출판지원단(M25060587)